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서미화·허성무·이수진

박정현 • 백혜련 • 정동영

송재봉 • 김우영 • 용혜인

이용선 · 김영환 · 권칠승

박홍배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·운영하도록하고 있음.

또한,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·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,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, 실태조사 결과를

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1항 중 "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"를 "지원하여야"로 한다.

제34조의5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,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	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		
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	안전 환경 지원) ①		
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			
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			
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			
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			
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			
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			
등 필요한 사항을 <u>지원하기 위</u>	<u>지원하여야</u>		
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34조의5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	제34조의5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		
뉴얼 작성·운용) ① ~ ⑨ (생	뉴얼 작성·운용) ① ~ ⑨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취약		
	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		
	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		
	공표하여야 하며, 실태조사 결		
	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		
	하여야 한다.		
<u>⑩</u> 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10항과 같음)		